



새수영

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수영구보

호외 제637호 2021. 12. 31.(금)

규 칙

-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-----1
-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-----5

고 시

- 2022년 시행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-----28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대리 규칙
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12월 31일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

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36호

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

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”로, “부단체장”을 “부구청장”으로 하며, “순위에 의한”을 “순위에 따라”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구청장, 부구청장의 결원, 출장, 기타사고(이하 “사고”라 한다)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같은 항 제2호 중 “순위에 의한”을 “순위에 따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중 “당해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거한”을 “해당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따른”로 하며, 제4호 중 “실·단·과장”을 “과장”으로, “실·단·과”를 “과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리한다.

제4조 중 “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대리하는 자는”을 “대리하는 사람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◆ 제안이유

2021.7.1.자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및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상 인용조문 변경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◆ 주요내용

- 가. 2021.7.1.자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(제2조, 제3조)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인용 조문 변경(제2조제1항)
- 다.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 정비

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
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12월 31일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

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37호

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

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사무인계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,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·인수할 때 적용한다.

1.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
2.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구청장 이하 소속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

제3조(구청장의 사무인계)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별표의 항목을 별지서식에 따라 부서별로

작성한다. 다만, 중요재산·물품·재무현황 등과 같이 집중 관리되는 항목은 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한다.

③ 담당 부서장은 항목별로 작성된 사무인계서의 내용을 확인·날인 하여야 하며, 확인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, 대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무원의 사무인계) ① 공무원은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.

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계 할 때에는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별지 제12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.

제5조(사무인계인수의 참관)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, 참관인은 사무인계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의 사무인계 시 참관인은 부구청장으로 하되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6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참관인은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으로 한다.

③ 부구청장 이하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. 다만, 보건소장 및 동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.

제6조(사무인계인수서 등의 보관)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서 1부는 행정지원과에서 10년간 보존·관리한다.

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.

제7조(사무인계인수의 거부)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수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구의 폐지, 설치,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)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지, 설치,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.

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내에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의 인계내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내용 및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무인계인수서는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.

<별 표>

사무인계인수사항

항 목
1. 사무인계인수서(표지)
2. 주요사업추진현황
3. 주요지시사항목록 (대통령, 국무총리, 장관, 시장, 구청장 등)
4. 보유기록물 목록
5. 재산조서
6. 물품내역 6-1. 관사비품 목록(정원수, 장비 등 포함) 6-2. 사무용비품 목록 6-3. 도서 목록
7. 장비내역 7-1 행정장비목록 7-2 건설 기타장비목록
8. 차량 현황
9. 채권, 채무조서 9-1. 채권조서 9-2 채무조서
10. 세입세출예산현계표 10-1 세입예산현계표 10-2 세출예산현계표 10-3 일상경비현계표 10-4 국비세출예산현계표
11.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
12.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
13. 적립금 조서
14. 유가증권 수불현계표
15. 보조금 수지현계표
16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<별지 서식>

사 무 인 계 인 수 서

부산광역시 수영구

○ ○ ○ 사무인계인수서

1. 년 월 일 현재 ○ ○ ○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.
2.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.
3. 인계인수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.

○ 인계자 : 전직위 성 명 (인)

○ 인수자 : 직 위 성 명 (인)

○ 참관인 : 직 위 성 명 (인)

주요사업 추진현황

구 분	건 명	사업내용(개요)	추진현황	추진부서

※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, 계속추진대상업무,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을 포함

위 사실을 확인함.

년 월 일

확인자 : 직위

직급

성명

인

주요지시사항 목록

지 시 사 항			추진상황	주관부서
지시구분 (지시자)	일자	지시내용(요약)		
위 사실을 확인함.				
년 월 일 확인자 : 직위 직급 성명 인				

보유기록물 목록

1. 총괄현황

부서별	합 계	영구	준영구	30년	10년	5년	3년	1년
계								

2. 세부 현황

부서명	생산연도	종료연도	기록물철 제목	기록물건 제목	쪽수	기록물형태	보존기간	비 고

위 사실을 확인함.

 년 월 일

확인자 : 직위

직급

성명

인

재 산 조 서

구 분		토 지(천㎡)		건 물(천㎡)		기 타
		필지	면적	동수	면적	
합 계						
공유 재산	소 계					
	행정 재산	계				
		공용재산				
		공공용재산				
		기업용재산				
		보존용재산				
	일 반 재 산					
국유 재산	소 계					
	행정 재산	계				
		공용재산				
		공공용재산				
		기업용재산				
		보존용재산				
	일 반 재 산					

*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.

위 사실을 확인함.

년 월 일

확인자 : 직위

직급

성명

인

물 품 내 역

1. 관사비품 목록(정원수, 장비 등 포함)

*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.

2. 사무용비품 목록

* 별도 부서별 물품보유현황과 같음.

3. 도서 목록

소관별	총수량	비고
계		

*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.

위 사실을 확인함.

 년 월 일

확인자 : 직위

직급

성명

인

장 비 내 역

1. 행정장비 목록

장비명	단위	규격	수량	상 태			비고
				신품	중고	사용불가	

* 내역은 별도 부서별 물품보유현황(장비대장)과 같음.

2. 건설 기타장비 목록

장비명	단위	규격	수량	상 태			비고
				신품	중고	사용불가	

* 내역은 별도 부서별 물품보유현황(장비대장)과 같음.

위 사실을 확인함.

 년 월 일

확인자 : 직위 직급 성명 인

차 량 현 황

부서별	차 종	차량번호	취득일자	사용연료	사용자	비 고

위 사실을 확인함.

년 월 일

확인자 : 직위

직급

성명

인

채 권 · 채 무 조 서

1. 채권조서

부 서 별	건 명	채 권				채 무 자
		금 액	발 생 일	소멸일자	목적 또는 사유(조건)	

※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.

2. 채무조서

일자별	건 명	목 적 또 는 용 도	기 채			기상환액 (이자/ 원금)	잔 액 (이자/ 원금)	채권자	주관부서
			금 액	이율 및 조 건	상환기간				

위 사실을 확인함.

년 월 일

확인자 : 직위

직급

성명

인

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

1. 세입예산현계표

회 계 별	세입예산현액	징수결정액	수 납 액	과오반납액	불납결손액	비 고
계						

2. 세출예산현계표

회 계 별	예산현액	수 입 액 (교부액) ①	지출액 ②	잔 액 ① - ②	비 고

※ 잔고증명 별첨

3. 일상경비현계표

교부액 ①	지출액 ②	잔 액 ① - ②	비 고

※ 잔고증명 별첨

4. 국비세출예산현계표

소 관 별	회 계 별	예산배정액	자금교부액	지 출 액	예산잔액	자금잔액	비 고
계							

※ 잔고증명 별첨

위 사실을 확인함.

년 월 일

확인자 : 직위 직급 성명 인

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

예 산 과 목			예 산 액	교 부		집 행		비 고
항	세항	목		금액	미수령액	금 액	잔 액	

위 사실을 확인함.

년
월
일

확인자 : 직위
직급
성명
인

적 립 금 조 서

종 별	금 액	기 간	이 율	통장번호	예 금 주	예치은행	관리부서

위 사실을 확인함.

년 월 일

확인자 : 직위

직급

성명

인

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

권 종 별	수 입		불 출		잔 고		수입목적	보관장소 및 관리부서
	매 수	금 액	매 수	금 액	매 수	금 액		
※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. 년 월 일 확인자 : 직위 직급 성명 인								

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

(단위 : 백만원)

보조 부서별	건명 (내역)	예산액	교부액	미수령액	집행액 (보조액)	잔액	정산액	비고
위 사실을 확인함.								
년 월 일								
확인자 : 직위			직급		성명		인	

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위 사실을 확인함.

년 월 일

확인자 : 직위

직급

성명

인

◆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인계 내용을 정비하고,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를 전자적 방법으로 시행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함

◆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사무인계 내용 규정(제3조)
- 나.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내용 규정(제4조)
- 다. 사무인계 시 참관인 규정(제5조)
- 라. 사무인계인수서 보관(제6조)
- 마. 사무인수의 거부 및 기구의 폐지 시 등의 사무인계(제7조~제8조)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1-114호

2022년 시행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

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2022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2월 31일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

I. 2022년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결정

1. 결정항목

가. 건축물 등 기준가격 : 「소득세법」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·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¹⁾

나. 오피스텔 시가표준액

- ① 용도지수
- ② 층 지수
- ③ 가감산율

다. 건축물별 시가표준액

-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
- ② 적용지수
- ③ 경과연수별 잔가율
- ④ 가감산특례
- ⑤ 증·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
-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
- ⑦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 요령

2. 세부결정사항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세무2과에 비치된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.

※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(<http://etax.busan.go.kr>)에서도 확인 가능

II. 2022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

1. 결정항목

가. 차량

-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적용요령 ④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⑤ 시가표준액

나. 기계장비

- ① 정의 ② 종류 ③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 적용요령 ⑤ 산출예시 ⑥ 시가표준액

다. 선박

- ① 정의 ②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③ 산출예시 ④ 적용요령 ⑤ 기준가격 ⑥ 잔가율표

라. 항공기

- ① 정의 ② 내용연수 및 잔가율 ③ 적용요령 ④ 항공기 기준가격표

마. 시설

-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(잔가율) ④ 기준가격표(기준가액) ⑤ 시가표준액 산출방법

바. 부수시설물

-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기준가격표 ⑤ 시가표준액 산출방법

사. 임목

-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시가 조사방법 ⑤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⑥ 시가표준액 적용요령

아. 어업권

-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시가표준액 ④ 시가표준액 적용방법

자. 광업권

- ① 용어정의 ② 광업권의 대상 ③ 용어해설 ④ 시가표준액 적용방법

차. 회원권(골프·콘도미니엄·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)

-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시가표준액 ④ 시가표준액 적용방법

카. 지하자원

- ① 용어정의 ② 지하자원(광물)의 대상 ③ 용어해설 ④ 시가표준액 적용방법

2. 세부결정사항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세무2과에 비치된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.

※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(<http://etax.busan.go.kr>)에서도 확인 가능

부 칙

제1조[시행일]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1) 2022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: 780,000원/m²(국세청에서 변경·고시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고시금액)